

안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정택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8-725
----------	-------

발의년월일 : 2021. 10. 6.
발의자 : 김정택 의원 등 10인

1. 제안이유

- 경관지구 및 중점경관 관리구역 외 경관특화를 위해 경관심의 건축물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는 오피스텔과 숙박시설의 경관 심의대상 규모를 정하여 행정절차 간소화와 합리적인 경관심의를 유도하고자 개정함.

2. 주요내용

- 경관심의 건축물 대상 4호 「그 밖에 경관특화를 위해 필요한 건축물」 나목 중 “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, 제15호의 숙박시설” 을 “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30실 이상인 건축물,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7층 이상 또는 연면적 2,000m² 이상인 건축물”로 개정 (안 제26조 관련 별표 1)

3. 개정조례안 : 붙임

4. 관련법령 발췌서 : 별첨

5. 예산수반사항 : 별첨(비용추계서 미첨부 자유서)

6. 입법예고 결과 : 해당없음

7. 기타 참고사항 : 별첨(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)

안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안산시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속		안산시의회
임 안 자	시 의 원	김정택의원 대표발의 (행정3562)

[별표 1]

□ 경관심의 건축물(제26조 관련)

구 분		건축물의 종류
1. 경관지구	가. 시가지 경관지구 (대부도 제외)	7층 이상 또는 연면적 2,000m ² 이상인 건축물
	나. 대부도 경관지구	단독주택 외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50m ² 이상인 건축물
2. 중점경관관리구역	가. 대부도 연안	단독주택 외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50m ² 이상인 건축물
	나. 대부횡금로	단독주택 외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50m ² 이상인 건축물
	다. 시화호 연안	7층 이상 또는 연면적 2,000m ² 이상인 건축물
	라. 다문화 마을	원곡동 일대의 중앙대로, 다문화길, 부부로, 원본로, 원곡로에 면한 4층 이상 또는 연면적 600m ² 이상인 건축물
3. 공공건축물	가. 시에서 건축하는 허가 (협의 포함) 대상 공공건축물	공공청사(시청, 구청, 사업소, 행정복지센터 등), 문화 및 집회시설(공연장, 관람장, 전시장 등), 의료시설, 교육연구시설, 노유자시설, 묘지관련시설(화장장, 납골당 등) 등
	나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「건축법」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	
	다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	
4. 그 밖에 경관특화를 위해 필요한 건축물	가. 「건축법 시행령」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	
	나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,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30실 이상인 건축물,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7층 이상 또는 연면적 2,000m ² 이상인 건축물	
	다.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건축물	
	1) 단독주택은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. 2) 경관지구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경관지구로 지정 고시된 지역에 한하여 적용한다. 3) 대부도 연안은 경관관리 우수한 지역으로 펜션, 근린생활시설 등의 관리를 위해 '대부도 연안 경계 100m 기준'으로 적용한다. 4) 대부횡금로는 현 도로경계선으로부터 '대지경계선 30m'까지 적용한다. 다만 앞으로 도시계획도로 조성 시 도시계획도로경계로부터 '대지경계선 20m'까지로 적용한다.	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	개 정 안		
[별표 1]		[별표 1]		
□ 경관심의 건축물(제26조 관련)		□ 경관심의 건축물(제26조 관련)		
구 분	건축물의 종류	구 분	건축물의 종류	
1. 경관 지구	가. 시가지 경관지구 (예보도 계획) 나. 대부분도 경관지구	7층 이상 또는 연면적 2,000㎡ 이상인 건축물 단독주택 외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50㎡ 이상인 건축물	가. 시가지 경관지구 (예보도 계획) 나. 대부분도 경관지구	7층 이상 또는 연면적 2,000㎡ 이상인 건축물 단독주택 외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50㎡ 이상인 건축물
	가. 대부분도 연안 나. 대체행급도 다. 시화호 연안 라. 다문화 마을	단독주택 외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50㎡ 이상인 건축물 단독주택 외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50㎡ 이상인 건축물 7층 이상 또는 연면적 2,000㎡ 이상인 건축물 원곡동 일대의 중앙대로, 다문화길, 부부로, 원본로, 원곡로에 면한 4층 이상 또는 연면적 600㎡ 이상인 건축물	가. 대부분도 연안 나. 대체행급도 다. 시화호 연안 라. 다문화 마을	단독주택 외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50㎡ 이상인 건축물 단독주택 외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50㎡ 이상인 건축물 7층 이상 또는 연면적 2,000㎡ 이상인 건축물 원곡동 일대의 중앙대로, 다문화길, 부부로, 원본로, 원곡로에 면한 4층 이상 또는 연면적 600㎡ 이상인 건축물
3. 공공 건축물	가. 시에서 건축하는 허가 (협의 포함) 대상 공공건 축물 나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「지방공기업법」 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「건축법」 제11조에 따른 허가대 상 건축물 다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	공공청사(시청, 구청, 사업소, 행정복지센터 등), 문화 및 첨화시설공연장, 관람장, 전시장 등), 의료시설, 교육연구시설, 노유자시설, 묘지관련시설(화장장, 낭골당 등) 등	가. 시에서 건축하는 허가 (협의 포함) 대상 공공건 축물 나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「지방공기업법」 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「건축법」 제11조에 따른 허가대 상 건축물 다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	공공청사(시청, 구청, 사업소, 행정복지센터 등), 문화 및 첨화시설공연장, 관람장, 전시장 등), 의료시설, 교육연구시설, 노유자시설, 묘지관련시설(화장장, 낭골당 등) 등
	가. 「건축법 시행령」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나. 「건축법 시행령」별표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,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, 제15호의 숙박시설 다.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건축물	나. 「건축법 시행령」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나. 「건축법 시행령」별표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,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30실 이상인 건축물,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7층 이상 또는 연 면적 2,000㎡ 이상인 건축물 다.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건축물	나. 「건축법 시행령」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나. 「건축법 시행령」별표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,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30실 이상인 건축물,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7층 이상 또는 연 면적 2,000㎡ 이상인 건축물 다.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건축물	
	1) 단독주택은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1호기록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. 2) 경관지구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경관지구로 지정 고시된 지역에 한하여 적용한다. 3) 대부분도 연안은 경관관리 우수한 지역으로 편선, 균형개발시설 등의 관리를 위해 「대부도 연안 경계 100m 기준」으로 적용한다. 4) 대부령금로는 현 도로경계선으로부터 「대지경계선 30m」까지 적용한다. 다만 앞으로 도시계획도로 조성 시 도시계획도로경계로부터 「대지경계선 20m」까지로 적용한다.	1) 단독주택은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1호기록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. 2) 경관지구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경관지구로 지정 고시된 지역에 한하여 적용한다. 3) 대부분도 연안은 경관관리 우수한 지역으로 편선, 균형개발시설 등의 관리를 위해 「대부도 연안 경계 100m 기준」으로 적용한다. 4) 대부령금로는 현 도로경계선으로부터 「대지경계선 30m」까지 적용한다. 다만 앞으로 도시계획도로 조성 시 도시계획도로경계로부터 「대지경계선 20m」까지로 적용한다.		